

##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2. 8

시민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 27.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 1. 27.
- 다. 상정일자 : 제77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1. 2. 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어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과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다는 입법취지를 정함.(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정· 심의· 의결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과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 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건의· 조정· 심의 및 의결도록 하였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와 공익을 대표하는자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어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와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사회복지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의 통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제4조제3항제1호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의 범위는?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사, 교수, 시설대표자 등이 포함적으로 해당됨.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구의원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되면 2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구의원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제3조제3항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하면 결정되는 사항인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 심의·의결된 사항을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는 것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위원회에서 전문가로 구성하면 되지 왜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또 수당·여비를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하려는 것인지?
- 답변요지(최승범 생활복지국장) : 회의때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수당·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내용 중 꼭 참석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한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수당·여비를 지급하는 것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유사위원회는 폐지하고 기존 위원회에 자격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면 되지 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지?
- 답변요지(최승범 생활복지국장) :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나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법은 실효된 상태이며, 조례는 새로 만드는 것으로 유사한 조례는 존·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  |
|--------|--|
| 의<br>안 |  |
| 번<br>호 |  |

제출년월일 : 200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어 2000.6.13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과 1999년9월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다는 입법취지를 정함.(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정·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3. 근거법령

- 가. 사회복지사업법(2000.1.12 법률 제6160호) 제7조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법률 제6024호) 제20조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2000.7.27 대통령령 제16924호) 제28조  
내지 제35조

### 4. 조례(안) : 불임

### 5. 예산조치 : 필요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수당 (2001년 예산에 반영 : 4,800천원)

###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0.12.15~2001.1.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1. 1. 1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의·조정·심의 및 의결한다.

1.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2. 복지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항
4.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개발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활동 및 공동 모금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중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6. 구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사회 복지과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보호위원회가 행한 심의·의결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